공 개

의안번호	제 114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3. 4. (제4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3. 4.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가 승인 요청한 별지의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원안대로 승인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청산결제 대상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추가

3. 주요골자

□ 청산결제 대상 주권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(안 제2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지>

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1호 중 “투자회사 주권”을 “투자회사 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”으로, “집합투자증권”을 “집합투자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으로, “투자신탁 수익증권”을 “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0. (생 략) 11. “주권등”이란 주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은 제외한다), 외국주식예탁증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, 상장지수증권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,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12. ~ 13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-----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----- 투자회사 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----------집합투자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, ----------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----------. 12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산운용과
연 락 처	02-2100-2664